

# 연세대학교 4단계 BK21 문제정의형 핵심 SW 인력양성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20.12.29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4단계 BK21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훈령」의 위임을 받아 BK21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연세대학교 문제정의형 핵심 SW 인력양성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문제정의형 핵심 SW 인력양성사업단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사업기간)**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.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31일까지로 한다.

##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

**제4조(교육연구단 목표)** 문제정의형 핵심 SW 인력양성사업단은 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문제정의형 핵심 SW 연구 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기반 미래컴퓨팅 분야에서 최상위 연구집단으로 성장”이라는 비전과 “2030년 글로벌 50위 진입”이라는 목표를 갖고 연구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다.

**제5조(조직구성)** ① 교육연구단장 산하에 교육, 연구, 산학협력, 국제화 영역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, 교육·연구 부문 5팀과 운영위원회, 인사위원회, 산학협력기구, 국제화협력기구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교육·연구 부문은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컴퓨팅팀, 사용자 인터페이스/사용자 경험팀, 지능적 데이터 컴퓨팅팀, 시스템 컴퓨팅팀으로 구성한다.
2. 인공지능팀을 추가 구성한다. 참여교수의 전체 인공지능대학원 겸직 발령하며, 인공지능대학원 전임교원을 공동 지도교수로 추가하여 교육·연구 부문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.

3.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, 참여교수 중 4-5인이 참여하며, 전체 6인 내외로 구성하며, 본 교육연구단의 모든 행정적, 재정적 관리를 담당한다.
4. 인사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, 팀장 4인 전체 5인 내외로 구성하며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 및 우수인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한다.
5. 산학협력 자문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외 산학 공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관련 기업으로 구성되며 교육연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한다.
6. 국제화 기구는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 해외 유수의 연구그룹 및 석학과 협력체계 구축한다.

**제6조(연구행정)** 4단계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사무실, 교육연구단 소속 연구행정인력을 둔다.

### 제 3 장 참여교수

**제7조(교육연구단의 장)**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제8조(교육연구단의 장)에 준용한다.

**제8조(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)**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제9조(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)에 준용한다.

**제9조(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)**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 제10조(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)에 준용한다.

② 참여교수 수는 사업신청서(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)기준으로 하며, 매년 사업기간 내의 업적을 교육연구단의 자체적인 업적평가 기준에 따른 참여교수 연구실적 환산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
③ 연구실적 환산 기준은 2020년 사업 선정평가 당시 평가 기준에 준하며, 중간평가 이후에는 중간평가의 평가 기준에 준하도록 한다.

④ 참여교수에게는 교육연구단 연구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으며,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등하여 지급하고,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 4 장 참여대학원생

**제10조(참여대학원생)**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 제11조(참여대학원생), 제12조(참여대학원생의 변경), 별표2「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」에 준용한다. ② 컴퓨터과학과 BK21 참여대학원생은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11조 11항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도를 원할 시, 추가로 공동 지도교수

를 설정할 수 있으며, 인공지능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선택 가능하다.

**제11조(지원대학원생의 자격)**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[제13조\(지원대학원생\)](#), 「4단계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기준에 준용한다.

**제12조(지원대학원생의 선발)**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여교수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기준 적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교육연구단 차원에서 지원대학원생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.

②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4월 1일, 10월 1일에 제출한다.

③ 지원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신진연구인력

**제13조(신진연구인력)**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[제14조\(신진연구인력\)](#)에 준용한다.

**제14조(신진연구인력의 임용)** ① 수시채용 공고에 따라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 이력서, 연구계획서, 활동계획서 등의 지원서를 접수받아 채용한다.

② 채용심사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연구단 전체 참여교수가 심사할 수 있다.

③ 신진연구인력의 근로 여건은 교내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에 준용한다. 재계약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다. 채용된 신진연구인력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다.

④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「4단계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의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기준에 준용한다.

⑤ 신진연구인력은 매 학기말 교육연구단 운영, 교육, 연구 부문에서의 활동성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운영위원회는 신진연구인력의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하며, 논문의 성과는 JCR 카테고리의 저널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.

## 제 6 장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

**제15조(지원범위)**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학술논문 게재,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[제29조\(사업비 지출항목\)](#), [제39조\(사업비 집행 관리\)](#), **【별표3】**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,

【별표4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, 「연세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(개정 20200722)」에 준용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.

② 신청자의 지원 개요를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장에게 사전 보고하며 지원여부 및 규모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집행한다.

**제16조(국제 학술논문)** ① 참여대학원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저작하는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, 논문 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에 따라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에서 지원한다.

③ 논문 저자소개에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소속임이 표기되어야 한다.

④ 논문게재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자는 사업비 집행 사전승인서, 게재논문 파일을 구비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.

⑤ 논문게재료 지원은 BK21 실적 인정 기준에 준하는 저널만 지원되며,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. 논문 투고시에 발생하는 입회비, 연회비, 심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.

**제17조(국제 학술대회 발표)** ① 참여대학원생이 저자로 표기된 국제학술대회 구두 논문 발표, 포스터 발표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제34조(국제화경비)에 준용한다.

③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에 따라 국제화경비 중 단기해외연수 항목에서 지원한다.

④ 지원규모는 「연세대학교 규정집」 [여비규정 (개정 20200827)] 기준에 준용한다. 단, 당해 사업연도 국제화경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.

⑤ 단, 발표논문의 경우 논문별 저자 중 2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.

⑥ 국제 학술대회 참가등록마감 2주일 전까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⑦ 학회등록비 신청시에는 사업비 집행 사전승인서, 학회발표수락 이메일, 학회등록비 결제영수증 원본, 학회등록비 요금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학회 프로그램,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. 교육연구단은 지원 개요를 교육연구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는다.

⑧ 출장신청시에는 학회발표 수락 이메일, 항공료 및 숙박비 결제 영수증 원본, 항공료 e-tiket, 학회 프로그램(장소, 일정, 소속기관 및 성명 등 명시), 해외연수 신청서[서식1],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[서식2]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.

⑨ 출장보고서에는 출장보고서, 해외연수 신청서,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, 학회 프로그램, 보딩패스 원본,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사본을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.

**제18조(장기해외연수)** ① 참여대학원생 중 장기해외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한다. 이는 사업2차년

도부터 선발할 수 있다.

-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제34조(국제화경비), 「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, 「연세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(개정 20200722)」에 준용한다.
- ③ 선발기획은 운영위원회가 총괄한다.
- ④ 후보는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희망자로 한다.
- ⑤ 희망자는 지도교수 추천서, 학술활동보고서, 연구계획서, 연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종합평가하여 선발한다. 심사항목은 희망분야, 희망기관, 준비정도, 연수계획, 연수능력 등으로 구성한다.
- ⑥ 해외연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되며,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  - 1.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때
  - 2.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  - 3.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 - 4.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
  - 5. 선정 이후에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
  - 6.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  - 7. 관리지침(연수계획서 포함)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  - 8.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해외연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- ⑦ 장기해외연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수진행 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.
  - 1. 착수보고서: 연수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
  - 2. 진도보고서: 연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(연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)
  - 3. 귀국보고서: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- 4. 기타보고서: 교육연구단에서 요구시 수시 제출
  - 5. 결과보고서: 연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
- ⑧ 장기해외연수자는 연구결과를 국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.

## 제 7 장 국제화경비 집행 및 관리

- 제19조(국제화경비)**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 제 29조(사업비 지출항목), 제39조(사업비 집행 관리), 【별표3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, 【별표4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, 「연세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(개정 20200722)」에 준용한다.
- ② 집행여부 및 규모는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집행한다.

## 제 8 장 기타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활동

**제20조(목적)**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참여대학원생의 개별 연구활동비 지급 외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술대회, 세미나, 특강 등의 학술활동을 개설 및 지원한다.

**제21조(국제학술대회)** ① 본 내규 제19조에 준용하여 연 1회 이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다.

**제22조(기초역량증진프로그램)** 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기초역량 향상을 위해 방법론, 연구설계, 영문논문작성법, 프리젠테이션 향상법 등을 주제로 하는 기초역량증진프로그램을 개설한다.

② 프로그램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기획한다.

③ 개최비는 사업운영비 중 회의 및 행사경비, 강의료는 사업운영비 중 학술활동지원비(전문가 초청 자문료)에서 지출한다.

④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참여대학원생, 학과 대학원 재학생을 우선순위로 한다.

⑤ 참여대학원생이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는 무료이며 외부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정의 수강료를 지불하도록 한다.

## 제 9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

**제23조(평가)**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제4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상시 준비한다.

**제24조(자체평가)** ① 교육연구단은 사업연도 종료 1개월 내에 직전 사업연도기간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.

②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기획은 교육연구단장, 운영위원회, 신진연구인력, 연구행정인력이 수행한다.

③ 자체평가보고서는 교육부문, 연구부문, 운영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재정, 인사 및 조직 성과관리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한다.

④ 자체평가보고서는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게시 및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.

부 칙 (2020.12.29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 및 경과조치) ① 본 내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4단계 BK21 운영 내  
규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,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, 추진실적, 사업비 집행 등  
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·집행된 것으로 본다.